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5호 2018. 2. 13.(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69호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에 관한 조례 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1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공영*) 6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조정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9 호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하동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나. 하동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구호활동)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8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공영규	1957.08.01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5584-5086	570801-1*****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울곡길 99-8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962-6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589㎡ (또는 ㎡)

목적

기타목적용을 위한 점용

기간

2018.02. ~2023.02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1일

하 동 군 수 (인)

